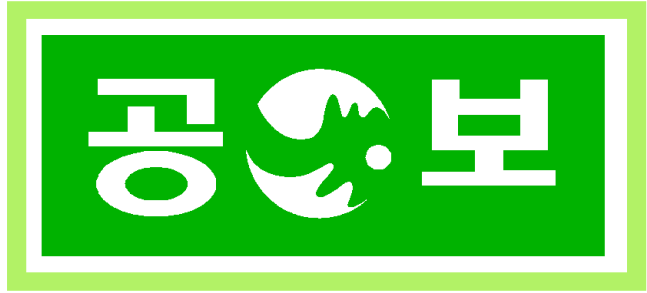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제 783 호 2012. 11. 12(월)

## 고 시

○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166호[도로명주소 고시] ..... 2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 -166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11월 12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 북구 명촌16길 9-13외 6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i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2. 11. 12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시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098 6-1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16길 9-13(명촌동)	2012-11-12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	2004-01-05	
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098 6-2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16길 9-11(명촌동)	2012-11-12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	2004-01-05	
3	울산광역시 북구 정지동 425-4	울산광역시 북구 정지2길 24(정지동)	2012-11-12	행정구역인 정지동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	2004-08-09	
4	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867	울산광역시 북구 달곡1길 209-3(무룡동)	2012-11-12	예전지명인 달곡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 부여	2004-08-09	
5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47-10	울산광역시 북구 양동4길 1(양정동)	2012-11-12	예로부터 양정동은 양정,양동,치진미울로 각각 나누어 불리었던 곳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양동이라 도로명을 부여	2004-01-05	
6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708 3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길 34(진장동)	2012-11-12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	2004-12-27	
7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148 8-1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3길 5-1(명촌동)	2012-11-12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	2004-12-27	